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8급 1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및 소상공인경영안정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한시조직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본부로

재배치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정책실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특구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손실보상과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2명(6급 15명, 7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0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자금”을 “금융·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경영환경 개선”을 “경영안정화 및 경영환경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5 및 제6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5.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6의6. 소상공인의 온라인 국내외 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제30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①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1명을 둔다.

②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제14조제3항제2호, 제6호의2, 제6호

의5, 제6호의6, 제8호, 제30조의3제3항 및 제30조의5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의5(소상공인경영안정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과를 둔다.

② 소상공인경영안정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상공인경영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상황 동향분석 및 현안 관리·대응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관련 부처 협업
3.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관련 부처 간 협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7.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 동향분석 및 대응
8.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9. 그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④ 소상공인경영안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소상공인경영안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6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89”를 “487”으로, 일반직 계 “483”을 “481”로, 3급 또는 4급 이하 “466”을 “46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75”를 “868”로, 일반직 계 “527”을 “520”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522”를 “515”로 한다.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3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창업벤처혁신실 1개 과	4명

[별표 5]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0조제4항, 제30조의3제4항, 제30조의4제4항 및 제30조의5제4항
관련)

1. 특구혁신기획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21
일반직 계	21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20

2.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3. 소상공인경영안정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이하	3

4. 소상공인손실보상과(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3급 또는 4급 이하	8

[별표 6]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1조 관련)

1. 제31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2. 제31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2
일반직 계	22
5급 이하	2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소상공인 <u>자금</u> 지원 및 공제 제도의 운영 3. ~ 6. (생략) 6의2. 소상공인의 <u>경영환경 개 선</u> 에 관한 사항 6의3. ~ 6의4. (생략) <u><신설></u> <u><신설></u> 7. ~ 33. (생략)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u>금융·자금</u> ----- ----- 3. ~ 6. (현행과 같음) 6의2. ----- <u>경영안정 화 및 경영환경 개선</u> ----- 6의3. ~ 6의4. (현행과 같음) 6의5. <u>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u> 6의6. <u>소상공인의 온라인 국내 외 진출지원에 관한 사항</u> 7. ~ 33. (현행과 같음)
제30조(특구혁신기획단) ① 중소 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 라 <u>2024년 12월 31일까지</u>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혁신기 획단을 둔다.	제30조(특구혁신기획단) ①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소상공인코로나19회복 지원단장) ①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 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 지원단장 1명을 둔다.	<삭 제>
②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삭 제>
③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 단장은 제14조제3항제6호의2, 제8호 및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 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④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 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제30조의3(소상공인손실보상과)	제30조의3(소상공인손실보상과)
①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 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	① ----- ----- ----- --- 2025년 12월 31일 --- -----

손실보상과를 둔다.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1명을 둔다.

②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제14조제3항제2호, 제6호의2, 제6호의5, 제6호의6, 제8호, 제30조의3제3항 및 제30조의5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실을 보좌한다.

④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의5(소상공인경영안정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신 설>

<신 설>

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
영안정과를 둔다.

② 소상공인경영안정과에 과장 1
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
다.

③ 소상공인경영안정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상황

동향분석 및 현안 관리·대응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관련

부처 협업

3.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관련 부처 간 협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기관과의 업무협조

<신 설> <신 설> 제31조(한시정원) ① ~ ④ 삭제 ⑤ (생략) ⑥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기업부 소속기관에 둔다.	<u>7.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 동향 분석 및 대응</u> <u>8.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u> <u>9. 그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u> <u>④ 소상공인경영안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u> <u>⑤ 소상공인경영안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u> 제31조(한시정원)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2025년 12월 31일</u>----- ----- -----.
--	---

[별표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489</u>	<u>487</u>		-2	
		•	•	•	•		
		•	•	•	•		
일	반	직	<u>483</u>	<u>481</u>		-2	
		계	•	•	•		
		•	•	•	•		
3	급	또는	<u>466</u>	<u>464</u>		-2	
		4급	•	•	•		
		이하	•	•	•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u>875</u>	<u>868</u>		-7	
		·	·	·	·	·	·
		·	·	·	·	·	·
일	반	직	계	·	·	·	·
			<u>527</u>	<u>520</u>		-7	
		·	·	·	·	·	·
3	급	또는	4	급	이하	·	·
			<u>522</u>	<u>515</u>		-7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